의안 번호	106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심 사 보 고 서

2026.10.27.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0. 16. 창원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미리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관련법령

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나.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다.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

라.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82호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2조(센터 운영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

4. 주요내용

○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안)

(단위 : 천원)

연번	수탁·대행 공공기관	사 업 명	위탁·대행 기간	위탁·대행 예 정 액	부 서
계	1개 기관	5개 사업		9,100,000	
1	창원산업진흥원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사업	2027	500,000	미래전략과
2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리	2027	5,100,000	전략산업과
3	창원산업진흥원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재위탁)	2027~2029	1,500,000	미래신산업과
4	창원산업진흥원	C-블루윙펀드 5호 조성	2027	1,000,000	
5	창원산업진흥원	청년창업펀드 조성	2027~2029	1,000,000	

5.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전현주)

○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장이 사무를 위탁·대행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은 미래전략과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사업 등 1건, 전략산업과 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리 등 1건, 미래신산업과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재위탁) 등 3건, 총 3개 부서 5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대행하고자 함.

1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사업 - 미래전략과

○ 본 사업은 관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수출상담회(2027년 4월 초, 진해군항제 연계, 관내 기업 30개사・해외 바이어 10개국 30개사)를 개최하고, 시장개척단(2027년 하반기, 그리스・튀르키예, 관내 기업 10개사)을 파견하는 2027년 신규사업임.

○ 특히 관내 선박엔진 산업의 수직계열화 체계를 기반으로 앵커기업의 글로벌 브랜드를 공유하는 대・중・소 동반 진출 모델을 통해 중소 기자재 제품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근거는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음.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사업의 일부 2. 공유재산 중 재단과 관련된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은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수출지원 원스톱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1.~12.)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리 - 전략산업과

○ 본 사업은 창원시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9개소(팔룡・성주・덕동・죽곡・사림・가포・대원・마산자유무역지역・창원터널)와 수소인프라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이용자 관리 및 사용요금 정산 등을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 2027년 운영예산은 총 10,286,900천 원으로 시비 5,100,000천 원, 수소 판매 수익금 4,104,993천 원, 환경부 수소충전소 연료비 보조금(국비) 1,081,907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근거는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있음.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

○ 수탁기관은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으로, 정관에 수소충전소 운영 및 그에 부수된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위탁사무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해당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1.~12.)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운영예산 중 수소 구입 등 재료비(4,647,000천 원)가 수소 판매 수익금(4,104,993천 원)을 약 542,000천 원 초과하는 구조이므로, 충전소별 판매량·구입단가·판매단가 등 운영실적과 적자 보전 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재위탁) - 미래신산업과

○ 본 사업은 진해첨단연구산업단지 내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입주기업 선정·관리, 사용료 부과·징수, 기업지원사업 기획·운영 등을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사업 선정 이후 2024년 7월 사용승인을 거쳐 2025년 2월 개소하였음.

○ 2024년 최초 위·수탁계약 이후 창원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율이 2024년 말 84.3%에서 2026년 8월 말 100%(49개사·3개 기관)로 상승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본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근거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82호) 제22조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있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제22조(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82호)
제22조(센터 운영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 ① 지자체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등)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운영기관"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은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으로, 개소 이후 센터를 운영해 온 경험이 있고 전국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31개소 중 30개소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해당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대행 기간은 3년(2027년~2029년)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C-블루윙펀드 5호 조성 - 미래신산업과

○ 본 사업은 경남에 소재하거나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 중 전략산업 10개 분야 및 미래신산업 6개 분야의 유망기업에 성장자금을 투자하는 펀드(조성액 18,600백만 원)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시 출자액은 총 1,000백만 원(2025년~2028년, 연 250백만 원)임.

○ 펀드 존속기간은 조성일로부터 8년(투자 4년, 회수 4년)이며, 운용

사는 ㈜경남벤처투자와 나우아이비캐피탈(주)이고, 시 출자액의 2배 이상을 관내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근거는「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7조와「창원산업진흥원 정관」제4조제1항제11호에 있음.

※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정관 제4조
제4조(사업) ① (생 략) 1. ~ 10. (생 략) 11.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 수탁기관은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으로, 정관에 따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본 사업을 해당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1.~12.)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회수기간(~2033년) 중 출자지분 관리 및 회수금 귀속 방안, 기존 C-블루윙펀드의 관내기업 투자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청년창업펀드 조성사업 - 미래신산업과

○ 본 사업은 창원시 관내 유망 청년창업기업(대표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성

장자금을 투자하는 펀드(조성액 15,000백만 원 추정)에 출자하는 2027년 신규사업으로, 시 출자액은 총 1,000백만 원(2027년 400백만 원, 2028년・2029년 각 300백만 원)임.

○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과 연계하여 2027년 11월 조합 결성 및 출자금 납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펀드 존속기간은 8년(투자 4년, 회수 4년)이고 시 출자액의 2배 이상을 관내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근거는「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7조와「창원산업진흥원 정관」제4조제1항제11호에 있음.

○ 수탁기관은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으로, 정관에 따라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본 사업을 해당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대행 기간은 3년(2027년~2029년)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최초 위탁·대행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펀드 조성 규모와 운용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선정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미선정 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5건에 대한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위탁·대행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담당 부서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운영수지 개선과 펀드사업의 투자 위험 관리 및 출자지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각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임.

6.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동의)**

9. 소수의견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